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일자 : 2016. 6. 24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사명을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변경하고,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중 “주택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하고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“서울주택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각각 수정함.
- 부칙으로 다른 조례 중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 등 사명(社名)을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명 중 “주택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

안 제1조 및 제2조의 “서울주택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

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에스에이치(SH)공사의 정의는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정의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에스에이치(SH)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에스에이치(SH)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본다.

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의 “에스에이치 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의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“

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마목의 "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(이하 "SH공사"라 한다)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4조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"SH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"SH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및 제15조제3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3조의2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

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다목 및 제17조제4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하고, 제3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"에스에이치(SH)공사사장"을 "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"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5항의 "에스에이치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생략)		<p><u>기타 공부상의 에스에이치(SH)공사의 명의를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.</u></p>
	<p>〈신설〉</p>	<p>② <u>이 조례 시행당시 에스에이치(SH)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에스에이치(SH)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본다.</u></p>
	<p>〈신설〉</p>	<p><u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2조제13호의 "에스에이치 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
	<p>〈신설〉</p>	<p>② 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
	<p>〈신설〉</p>	<p>③ <u>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 data-bbox="868 555 1002 595">〈신설〉</p> <p data-bbox="868 1010 1002 1050">〈신설〉</p>	<p data-bbox="1066 315 1145 356">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371 1422 517">제20조 중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555 1422 701">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716 1422 974">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각각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010 1422 1205">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220 1422 1478">제2조제1호마목의 “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(이하 “SH공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494 1422 1639">제4조의 “SH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677 1422 1872">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“SH공사”를 각각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888 1422 1980">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“SH공사”를 각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 data-bbox="868 622 1002 663">〈신설〉</p> <p data-bbox="868 1294 1002 1335">〈신설〉</p> <p data-bbox="868 1688 1002 1729">〈신설〉</p>	<p data-bbox="1066 309 1423 405"><u>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421 1423 573"><u>제14조제2항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622 1423 831"><u>⑥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846 1423 1106"><u>제2조제5호 및 제15조제3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1122 1423 1274"><u>제3조의2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1294 1423 1503"><u>⑦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1518 1423 1671"><u>제19조제3항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1688 1423 1841"><u>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1066 1856 1423 1953"><u>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"에스에이치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 data-bbox="868 432 1002 472">〈신설〉</p> <p data-bbox="868 853 1002 893">〈신설〉</p> <p data-bbox="868 1581 1002 1621">〈신설〉</p> <p data-bbox="868 1921 1002 1962">〈신설〉</p>	<p data-bbox="1066 315 1422 405">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432 1422 584">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600 1422 801">제21조제1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853 1422 1055">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070 1422 1554">제2조제2호다목 및 제17조제4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하고, 제3조 각호를 제외한 본문 중 "에스에이치(SH)공사사장"을 "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"으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581 1422 1733">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749 1422 1901">제55조제15항의 "에스에이치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1066 1921 1422 1962">⑫ 서울특별시 도시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<u>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제1항의 "에스 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⑬ <u>서울특별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12조제1항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(SH)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중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
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에스에
이치(SH)공사의 정의는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정의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에스에이치(SH)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
법률관계에 있어서 에스에이치(SH)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

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의 "에스에이치 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마목의 "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(이하 "SH공사"라 한다)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4조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"SH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"SH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14조제2항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및 제15조제3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제3조의2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다목 및 제17조제4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하고, 제3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"에스에이치(SH)공사사장"을 "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"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5항의 "에스에이치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⑫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<u>에스에이치(SH)공사</u>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, 주택의 건설·개량·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<u>에스에이치(SH)공사</u>를 설립하고,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<u>에스에이치(SH)공사</u>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<u>서울주택도시공사</u>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주</u> <u>택도시공사</u>----- -----</p> <p>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<u>서울주택도</u> <u>시공사</u>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부 칙〉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 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<u>에스에이</u> <u>치(SH)공사</u>의 정의는 이를 <u>서울주</u> <u>택도시공사</u>의 명의로 본다.</p> <p>② 이 조례 시행당시 <u>에스에이치</u> <u>(SH)공사</u>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 관계에 있어서 <u>에스에이치(SH)공</u> <u>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</u>로 본다.</p>

현행	개정안
	<p>제3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3호의 “에스에이치 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의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>③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0조의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>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“에스에이치(SH)공사”를 각각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>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호마목의 “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(이하 “SH공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주택도시공사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의 “SH공사”를 “서울주택도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<u>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"SH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3조제1항 및 제2항, 제14조제2항의 "SH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<u>⑥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2조제5호 및 제15조제3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<u>제3조의2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<u>⑦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19조제3항 중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<u>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u></p> <p><u>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제21조제1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p> <p>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2호다목 및 제17조제4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각각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하고, 제3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"에스에이치(SH)공사사장"을 "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"으로 한다.</p> <p>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55조제15항의 "에스에이치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p> <p>⑫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2조제1항의 "에스에이치(SH)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p> <p>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2조제1항의 "SH공사"를 "서울주택도시공사"로 한다.</p>